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 2장.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 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 알콜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음.
- 공격적 또는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3) 관계적 특성

-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 가정 환경적 특성

-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4.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행위	증상
· 때린다. · 꼬집는다. · 세게 친다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를 구속한다. · 감금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상처, 찢린상처, 생체기, 출혈, 골절)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은 상처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② 정서적 학대

행위	증상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향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해도 “네”, “아니요” 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 표정이 없다 · 정서 상태 : 우울, 공포, 혼돈, 부정, 분노, 흥분, 수동적 상태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속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피한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성적학대

행위	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로 성행위 및 성 폭행 하는 것 ·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폭행 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④ 경제적 학대 (착취)

행위	증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을 가로 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채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 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행위	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청기, 안경, 의치, 휠체어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서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⑥ 자기방임

행위	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

행위	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접수
- ⑤ 서신에 의한 접수
-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한 사례 접수
-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 ① 노인복지법제39의 6-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 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노인복지법제39조의 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6.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7. 노인 학대 처벌법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

법	내용	벌금
노인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 학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특성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 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법

-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
-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업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노인 학대 예방수칙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⑨ 학대받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려고 하기 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 ① 노인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봐야 한다.
- ③ 노인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 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한다.
- ④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⑤ 잠재된 노인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 ⑥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지 않는다.
- ⑦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 ⑧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간다.

11. 폭력 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

- 폭력적인 어르신에 의한 동료어르신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 ① 우선 피해 어르신의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의료조치 및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야 한다.
- ② 이후 폭력 어르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건의 경과 이해하되, 폭력을 행사한 어르신의 행동의 부적절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 ③ 폭력 어르신과 가족에게 재발방지약속을 받되,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퇴소 조치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 ④ 인지적 증상과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공격성을 포함한 부적응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동료 어르신들에게 폭력적인 어르신의 행동을 이해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12. 시설 어르신 간에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대응반응

- ① 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동료어르신들끼리도 항아 존대어를 사용하여 하며, 어르신이 반말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언어표현을 고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② 이름만 부르나 치매환자 등 인지수준이 낮은 어르신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
- ③ 종사자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항상 긍정적으로 어르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④ 폭력적 어르신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다
배회나 욕설, 자학행위 등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를 찾아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⑤ 해당 어르신이 흥분한 상태라면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도록 한다.
- ⑥ 상황이 심각하고 폭력성이 많은 어르신인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몇 칠 동안 가족의 보호 아래 지내실 것을 권유한다.
가족을 통해 어르신을 설득시키고 안정시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드린다.
- ⑦ 일차적으로 어르신과 가족에게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종사자나 동료어르신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입소계약이나 시설 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⑧ 시설은 치매 어르신 등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 종사자 스스로 증상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어르신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